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3회 임시회(2020. 9. 7.)

2020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

2020년 제2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0-97

2020. 9. 7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구의회사무국)

나. 제 출 일 : 2020. 8. 25.

다. 회 부 일 : 2020. 8. 26.

2.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가. 세 입

○ 해당 없음.

나. 세 출

○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,112만 8천원 감소한 38억6,286만5천원임.

(단위:천원)

분야 · 부문 · 정책사업	예 산 액	기 정 액	비교증감	증감률
총 계	3,862,865	3,883,993	△21,128	△0.54%
정책사업	1,645,749	1,641,677	4,072	0.25%
재무활동	0	0	0	0.00%
행정운영경비	2,217,116	2,242,316	△25,200	△1.12%

다. 추가경정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

(단위:천원)

단위사업(회계)	예 산 액	기 정 액	비교증감	증감률
일반공공행정	1,645,749	1,641,677	4,072	0.25%
입법및선거관리	1,645,749	1,641,677	4,072	0.25%
선진의회상 정립	1,645,749	1,641,677	4,072	0.25%
의정활동 지원	1,555,432	1,561,837	△6,405	△0.41%
의정활동 홍보	90,317	79,840	10,477	13.12%
기타	2,217,116	2,242,316	△25,200	△1.12%
기타	2,217,116	2,242,316	△25,200	△1.12%
행정운영경비	2,217,116	2,242,316	△25,200	△1.12%
인력운영비	2,087,716	2,087,716	0	0.00%
기본경비	129,400	154,600	△25,200	△16.30%

라.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예산안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비교증감	증감률
사무관리비	200,479	176,459	24,020	13.61%
국내여비	32,080	57,280	△25,200	△43.99%
국제화여비	0	24,000	△24,000	순감
의원국외여비	0	61,425	△61,425	순감
시설비	75,000	50,000	25,000	50.00%
자산및물품취득비	74,830	34,353	40,477	117.83%

마.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

(단위:천원)

세부사업 · 편성목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1)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소모품 구매	25,000	0	25,000
1)국외여비	0	24,000	△24,000
2)의원해외비교시찰 등 수행	0	24,000	△24,000
1)의회시설 개선 및 보수	25,000	0	25,000
2)도색(2~3층 복도 및 계단실 등)	15,000	0	15,000
2)바닥 보수 등	10,000	0	10,000
1)본회의장 환경개선	40,000	10,000	30,000
1)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 수당	0	980	△980
1)의원해외비교시찰 등	0	47,250	△47,250
2)의원	0	47,250	△47,250
1)국제회의, 자매결연 등 추가편성		14,175	△14,175
1)디지털홍보게시판 추가 설치	10,477	0	10,477
1)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	25,200	50,400	△25,200

3. 검토결과

가. 예산규모

○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억8,399만3천원보다 0.54%, 2,112만8천원이 감소한 38억6,286만5천원임.

나.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

○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의 국제화여비 2,400만원(△100%), 국외 선진의회 연수의 국외 여비 6,142만5천원(△100%), 행정운영경비 직원 국내여비 2,520만원(△44%)이 감액되었으며,

○ 의정공통업무지원 차원의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, 자산취득비 8,000만원,

의정활동 홍보 내실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,04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4. 검토의견

○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,

○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-19 발생으로 인한 해외선진의회 연수 계획 철회에 따른 여비의 감액과 신청사 이전 후 마포구의회 개원 이래 10여년이 지난 가구 및 물품 등의 내용연수 도래로 사무 집기 교체와 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, 아울러,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‘디지털 게시판 설치’를 위해 편성되었음.

일련번호	물품분류번호	품명	내용연수
1522	56101703	책상	8
1523	56101705	유리진열장	8
1524	56101706	회의용탁자	8
1525	56101708	이동형파일서랍	7
1528	56101793	보조책상	8
1532	56112102	작업용의자	8
1533	56112105	라운지용의자	8
1534	56112108	책상용콤비의자	9

[내용연수, 조달청고시 제2018-14호, 2018.9.27.]

○ 국외선진의회 연수의 여비 감액은 코로나-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 국가 방문 불가에 따른 것으로 국가 보건 정책에 적극 동참 차원의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노후 시설 및 물품의 교체 예산은 그동안 의회 시설관리를 집행부에 의존하여 운영해 왔던 사항을 의회 중심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의회 기능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시설물 교체 및 물품 관리는 적극적 행정 조치사항으로 예측이 가능하므로 의회 기능 유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중 시설물 관리 계획 등의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 집행에 있어서는 「물품관리법」의 시설 및 물품별 내용연수를 참고하여 필요불가결한 사항만 선별적으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[관 계 법 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

「지방재정법」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